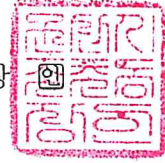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20일

조촌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마**	윤** 1999-12-27	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4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6-07